

##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1. 25.  
산업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0. 11. 19. 칠곡군수 제출
- 나. 회부일자: 2020. 11. 20. 회부
- 다. 상정일자: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 
(2020. 11. 25. 상정·심사·의결)

### 2. 제출설명의 요지(제출설명자: 농업정책과장 이상기)

#### ○ 제출이유

융자금이자 지원 기한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농협중앙회칠곡군지부 및 지역농협과 새로 협약한 내용을 반영하고,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기 위함.

#### ○ 주요내용

##### 가. 조례의 제명 변경

- 현 행: 「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」
- 개 정: 「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」

##### 나.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개정(안 제4조, 제5조, 제10조)

- 1) 조례 제정 당시에는 연초에 읍·면에 융자금 신청하였으나, 현재는 지역농협에 수시 신청 가능하여(2010. 12. 28. 조례 개정)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협의회 관련 조문 삭제
  - 선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(안 제4조)
  - 위원의 해임(안 제5조)
  - 수당 등 지급(안 제10조)
- 2)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신설(안 제4조)
  - 군수와 농협중앙회칠곡군지부장이 협약을 통해 추진

다. 융자금 지원한도액 증액

- 운영자금 1천만원, 시설자금 2천만원 → 운영자금 2천만원, 시설자금 3천만원

라.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변경

- 연금리 기준 10분의 3 → 연금리 기준 제8조에 따라 협약 체결한 비율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남성태)

#### ○ 본 개정 조례안은

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이차보조금 지원기한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농협중앙회칠곡군지부와 새로이 협약한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추진 상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농업인의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6. 소수의견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[원안가결](#)